

「2025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 제주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된 식품제조 및 가공(수산물)업체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추진 기본방향
 -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소비패턴 변화 대응을 위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 물류비(택배비) 일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2025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240,000천원	2025. 1. 1. ~ 11. 30.	수산정책과 (710-3246)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수협 및 수산물 가공업체(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개인업체)
-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식품
- 지원내용 : 제주산 수산물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시 도외(제주→육지부)로 발송하는 택배 1건당 2,000원 지원(배송주소지 제주 제외)
 - * 온라인판매: 자사몰, 온라인 플랫폼 활용 판매 등
- 지원기간 : 2025. 1. 1. ~ 2025. 11. 30.까지 (소급적용)
(타 부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물류비 보조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조건 : 소비자가 구매시 배송비 관련 **배송비 무료** 주문건에 한함
- 지원한도 : 수협 및 수산물 가공업체당 **최대 10,000건** 이내
(단,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 단가 및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율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제도」 준용(정액)
- 지원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식품
 - 지원 품목 외 기타 가공품 및 공산품류
- 선정방법: 자체심사
(선정 우선기준)
 - 우리 도에서 동일 사업으로 최근 3년간(2022 ~ 2024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HACCP인증, JQ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 업체

3. 신청 및 접수

- 제출기간 : 2025. 1. 10.(금) ~ 1. 24.(금)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25. 1.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 1부
 - ②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2】 1부
 - ③ 사업계획서 【서식 3】 1부
 - ④ 단체소개서(해당될 경우) 【서식 4】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 ⑤ 자격요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1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1부
 -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서식 5】 1부
 - ⑧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6】 1부
 - ⑨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7】 1부
 - ⑩ HACCP, JQ인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될 경우) 1부
 - ⑪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판매처 링크, 판매품목, 판매실적 등)

4. 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택배 실적 증빙

- 2025. 11. 30.까지 실적분 인정되며, 사업 완료(택배 발송 및 택배비 결제)된 부분에 한하여 보조사업으로 간주 2025. 12. 31. 이후 보조금 집행 불가
- 실적 제출자료: 완료보고서, 택배비 결제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택배발송내역서
- 택배 발송내역서에는 보내는 사람, 송장번호, 배송일자, 배송처, 수산물 품목명, 무게(규격), 수량, 택배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해당 사항 확인 불가 시 실적 인정 불가

*보내는 사람은 보조사업자와 일치하여야 함(타인 대리 발송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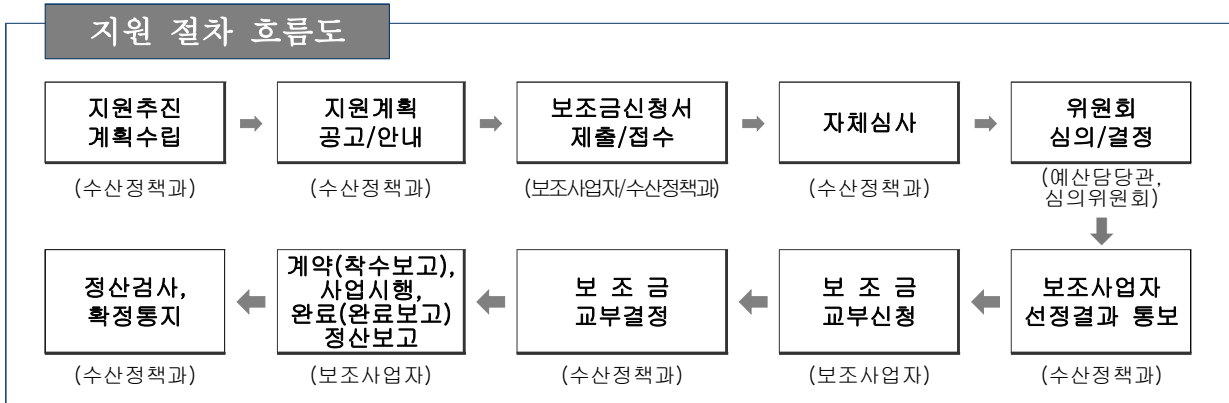
- 본 사업 포기자는 익년도 동일(유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수협 및 수산물가공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신청수협 및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수협 및 수산물가공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 신청자 부담으로 함

5.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지방비지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https://www.losims.go.kr/sp>)

6.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6)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증빙서류)
	품목	총출하량(박스)			보조금 신청액	
		규격	수량(개)	물량(kg)		
2025. 1.~11.	예시)수산물세트 (갈치, 옥돔, 고등어 등)	5kg 상자	1,000	2,500	2,000,000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내역 확인서 등
2025. 9월	예시)수산물세트 (갈치, 옥돔, 고등어 등)	5kg 상자	1,000	2,500	2,000,000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내역 확인서 등
2025. 12월	예시)수산물세트 (갈치, 옥돔, 고등어 등)	5kg 상자	1,000	2,500	2,000,000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내역 확인서 등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택배비	2,000	(판매품목 기재) ·갈치, 옥돔 가공품 200상자×200원 = 5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2024년 제주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지원금)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서명

대표자 : 성명

서명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무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명	대표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6】 뒷면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